부산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 21블록 입주자모집공고(안)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당사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533-055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관련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안내
- 부산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견본주택(sujain-ed.co.kr)을 운영합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기간 및 정당계약 기간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전신 소독기,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대표전화(1533-0554)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모든 상담원이 상담 중으로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9.27.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0.22.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강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22.)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청약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해당 지구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자녀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필요	필요	-
소득기준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sujain-ed.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소유권이전일까지)	3년(소유권이전일까지)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4항에 의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지역/기타지역)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다자녀, 노부모부양)	일반1순위(해당지역)	일반1순위(기타지역)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11월 01일(월)	11월 02일(화)	11월 03일(수)	11월 04일(목)	11월 10일(수)	11월 22일(월) ~11월 26일(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 건축과 -56728호(2021.10.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공동21BL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4층, 7개동 총 554세대 [특별공급 71세대(다자녀가구 55세대, 노부모부양 1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 세대, ㎡)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계		
민영주택	2021000777	01	102.0221A	102A	102.0221	25.3201	127.3422	64.6171	191.9593	63.3387	312	31	9	40	272	17
		02	107.8421A	107A	107.8421	26.3208	134.1629	68.3033	202.4662	66.9520	68	7	2	9	59	6
		03	132.9686A	132A	132.9686	32.1108	165.0794	84.2175	249.2970	82.5514	47	5	1	6	41	2
		04	132.4631B	132B	132.4631	31.7309	164.1940	83.8974	248.0914	82.2375	95	9	3	12	83	4
		05	132.2489C	132C	132.2489	32.1009	164.3498	83.7617	248.1115	82.1045	32	3	1	4	28	3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변경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필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람.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102A	107A	132A	132B	132C	합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1	7	5	9	3	5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9	2	1	3	1	16
합 계	40	9	6	12	4	7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층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1회(10%) 2022-03-04	2회(10%) 2022-07-04	3회(10%) 2022-11-04	4회(10%) 2023-04-04	5회(10%) 2023-08-04	6회(10%) 2023-12-04	입주지정일
102.0221A	1층	9	175,236,000	303,240,000	30,324,000	508,800,000	50,880,000	50,880,000	50,880,000	50,880,000	50,880,000	50,880,000	50,880,000	152,640,000
	2층	15	177,162,000	306,580,000	30,658,000	514,400,000	51,440,000	51,440,000	51,440,000	51,440,000	51,440,000	51,440,000	51,440,000	154,320,000
	3층	17	179,054,000	309,860,000	30,986,000	519,900,000	51,990,000	51,990,000	51,990,000	51,990,000	51,990,000	51,990,000	51,990,000	155,970,000
	4층	17	182,872,000	316,480,000	31,648,000	531,0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159,300,000
	5~9층	85	186,667,000	323,030,000	32,303,000	542,0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62,600,000
	10층이상	169	190,485,000	329,650,000	32,965,000	553,100,000	55,310,000	55,310,000	55,310,000	55,310,000	55,310,000	55,310,000	55,310,000	165,930,000
107.8421A	1층	2	184,526,000	319,340,000	31,934,000	535,800,000	53,580,000	53,580,000	53,580,000	53,580,000	53,580,000	53,580,000	53,580,000	160,740,000
	2층	6	186,667,000	323,030,000	32,303,000	542,0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62,600,000
	3층	6	188,695,000	326,550,000	32,655,000	547,900,000	54,790,000	54,790,000	54,790,000	54,790,000	54,790,000	54,790,000	54,790,000	164,370,000
	4층	6	192,694,000	333,460,000	33,346,000	559,500,000	55,950,000	55,950,000	55,950,000	55,950,000	55,950,000	55,950,000	55,950,000	167,850,000
	5~9층	30	196,716,000	340,440,000	34,044,000	571,20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171,360,000
	10층이상	18	200,715,000	347,350,000	34,735,000	582,800,000	58,280,000	58,280,000	58,280,000	58,280,000	58,280,000	58,280,000	58,280,000	174,840,000
132.9686A	1층	1	221,968,000	384,120,000	38,412,000	644,500,000	64,450,000	64,450,000	64,450,000	64,450,000	64,450,000	64,450,000	64,450,000	193,350,000
	2층	2	224,381,000	388,290,000	38,829,000	651,500,000	65,150,000	65,150,000	65,150,000	65,150,000	65,150,000	65,150,000	65,150,000	195,450,000
	3층	2	226,783,000	392,470,000	39,247,000	658,500,000	65,850,000	65,850,000	65,850,000	65,850,000	65,850,000	65,850,000	65,850,000	197,550,000
	4층	2	231,609,000	400,810,000	40,081,000	672,500,000	67,250,000	67,250,000	67,250,000	67,250,000	67,250,000	67,250,000	67,250,000	201,750,000
	5~9층	10	236,435,000	409,150,000	40,915,000	686,500,000	68,650,000	68,650,000	68,650,000	68,650,000	68,650,000	68,650,000	68,650,000	205,950,000
	10층이상	30	241,250,000	417,500,000	41,750,000	700,500,000	70,050,000	70,050,000	70,050,000	70,050,000	70,050,000	70,050,000	70,050,000	210,150,000
132.4631B	1층	3	220,937,000	382,330,000	38,233,000	641,500,000	64,150,000	64,150,000	64,150,000	64,150,000	64,150,000	64,150,000	64,150,000	192,450,000
	2층	4	223,339,000	386,510,000	38,651,000	648,500,000	64,850,000	64,850,000	64,850,000	64,850,000	64,850,000	64,850,000	64,850,000	194,550,000
	3층	4	225,718,000	390,620,000	39,062,000	655,400,000	65,540,000	65,540,000	65,540,000	65,540,000	65,540,000	65,540,000	65,540,000	196,620,000
	4층	4	230,544,000	398,960,000	39,896,000	669,400,000	66,940,000	66,940,000	66,940,000	66,940,000	66,940,000	66,940,000	66,940,000	200,820,000
	5~9층	20	235,325,000	407,250,000	40,725,000	683,300,000	68,330,000	68,330,000	68,330,000	68,330,000	68,330,000	68,330,000	68,330,000	204,990,000
	10층이상	60	240,151,000	415,590,000	41,559,000	697,300,000	69,730,000	69,730,000	69,730,000	69,730,000	69,730,000	69,730,000	69,730,000	209,190,000
132.2489C	2층	2	225,650,000	390,500,000	39,050,000	655,200,000	65,520,000	65,520,000	65,520,000	65,520,000	65,520,000	65,520,000	65,520,000	196,560,000
	3층	3	228,097,000	394,730,000	39,473,000	662,300,000	66,230,000	66,230,000	66,230,000	66,230,000	66,230,000	66,230,000	66,230,000	198,690,000
	4층	3	232,923,000	403,070,000	40,307,000	676,300,000	67,630,000	67,630,000	67,630,000	67,630,000	67,630,000	67,630,000	67,630,000	202,890,000
	5~9층	15	237,772,000	411,480,000	41,148,000	690,400,000	69,040,000	69,040,000	69,040,000	69,040,000	69,040,000	69,040,000	69,040,000	207,120,000
	10층이상	9	242,632,000	419,880,000	41,988,000	704,500,000	70,450,000	70,450,000	70,450,000	70,450,000	70,450,000	70,450,000	70,450,000	211,350,000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층별로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계약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불가하므로, 계약금 납부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이내) : 55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22)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운영지침」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이내) : 16**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무주택서약서	-	견본주택 비치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 존·비속	피부양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배우자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3세대이상 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만 18세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진단서, 출산이행각서는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청약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22)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1통 필요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 합니다.

※ 기본 제출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유의사항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table>
<tr><td>신청자격</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22)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22)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 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함.</td></tr>
<tr><td>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td><td>
<table>
<tr><th>구분</th><th>순위</th><th>주택형</th><th>청약관련 신청자격</th></tr>
<tr><td rowspan="2">민영
주택</td><td>1순위</td><td>전용
85㎡초과

가점제 30%
추첨제 70%</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td></tr>
<tr><td>2순위</td><td>전 주택형</td><td>▪ 상기 1순위에 해당 되지 아니한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포함)에 가입한 만19세 이상인 자</td></tr>
</table>
</td></tr>
<tr><td>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td><td>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td></tr>
<tr><td rowspan="4">청약시 유의사항</td><td>공통</td><td>•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이상 접수하지 않음)</td></tr>
<tr><td>1순위</td><td>•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를 추점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td></tr>
<tr><td>2순위</td><td>•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으로 청약접수 함.</td></tr>
<tr><td>추첨제</td><td>•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td></tr>
</table>

▪ **청약신청 기타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②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③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비고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소유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며, 단, 주택을 소유한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부양가족수에 제외하여 산정 함.(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 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분양)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09.0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1.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 하여야 함.
2.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3.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① 수도권 : 1년
②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③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4.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Ⅳ 청약 신청 방법 및 장소, 구비서류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2021.11.01(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87-6번지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2021.11.02(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1순위 (기타지역)	**2021.11.03(수)** 09:00~17:30		
	2순위	**2021.11.04(목)**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모두 완비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4">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참고 :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가점제 비율 50%, 청약과열지역내 공급 주택은 가점제 비율 30%,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는 가점제 비율 0~50%까지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신청자가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2021.11.10.(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11월 22일(월) ~ 11월 26일(금)**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87-6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 됨.

※ 당첨자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 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 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일정 및 당첨자 서류 확인 일정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 할 예정이며,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첨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HOME'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11.10 (수) ~ 2021.11.19 (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11.10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Ⅵ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안내

구 분	일 정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 장소
자격확인서류 제출	- 2021.11.11.(금) ~ 2021.11.20.(토) (10:00~16:00)	견본주택: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87-6번지
계 약 체 결	- 2021.11.22.(월) ~ 2021.11.26.(금) (10:00~16:00)	

※ 지정된 계약 기간 이내에 계약체결이 되지 아니할 경우, 당첨자의 지위를 상실하며,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됨.
※ 서류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변동시 일정 안내 함.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은 취소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함.
※ 아래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공급/일반공급)	O		계약금	-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및 입금확인서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O	서약서	-	• 견본주택에 비치 ※ 특별공급(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요건(무주택) 등) 및 1순위 추첨제(무주택자,1주택(처분요건) 당첨자 등 서약서 작성
	O		신분증	계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O		출입국사실증명서	계약자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O		주민등록등본	계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초본	계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자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유무 확인
	O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계약자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O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주사실명증명서
		O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특별공급	O		특별공급 구비서류	계약자	• 해당 특별공급 관련 서류 지참(본문 ‘Ⅱ.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참조)
일반공급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피부양와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O	복무확인서	계약자 (장기복무군인)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다만,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0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무주택 소명서류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당첨사실 소명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당첨 사실 무효확인서,가점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 서류 등)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0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견본주택 비치)
	0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및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0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위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2019. 08. 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에 체류한 경우, 청약신청자는 사업주체에게 정식 발령공문 등에 의한 해외체류인지 단순 해외여행인지 여부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기본 제출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추후, 계약 시 계약구비서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무순위청약으로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함으로써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 합니다.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의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할 경우, 사업주체에서 판단하여 한국부동산원에 당첨자명단에서 제외 요청할 예정이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이후 청약통장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는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증, 개축 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 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단, 부적격당첨자(예비입주자포함)로 판매된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플러스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자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분양자(매도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합니다.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업체의 선정 및 시공 상의 고려 등의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 시 선택한 마감자재의 선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효과 등은 분양계약서를 준용합니다. 이 때,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위 통지를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 간주된 후 2주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마감자재 등 선택사항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 본 주택의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공급 받은 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국민은행	069101-04-265218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센터	

• 지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수입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받은 대출이자 대납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가의 총 50%내에서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해주며, 입주 시 납부된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함.
• 대출은행과 대출협약에 따라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사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당사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가능하나, 정부의 관련정책,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자 자기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 제한, 보증서 발급제한 등) 등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 접수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대출취급상품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주택구입자금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보증수수료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함.(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본 주택 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정보제공 미동의에 따른 대출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에 책임지지 않음)
• 당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Ⅶ 별도 계약 품목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잔금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102A	7,490,000	1,000,000	6,490,000	계약시 공사부분 확인바람
107A	7,830,000	1,000,000	6,830,000	
132A	9,190,000	1,000,000	8,190,000	
132B	8,620,000	1,000,000	7,620,000	
132C	9,110,000	1,000,000	8,110,000	

· 발코니확장금액납부계좌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및발코니확장대금납부계좌	국민은행	069101-04-265221	주택도시보증공사남부피에프금융센터

※무통장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바람(단,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계약체결시 무통장입금증 지참요망.(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유의사항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공동주택의발코니설계및구조변경기준:건축법시행령제2조14호,제46조제4항제5항및관련규정등에의해공동주택의발코니는관계법령이허용하는기준내에서구조변경할수있으며,발코니구조변경은입주자모집공고시공개된금액의총액범위내에서사업주체에서정한기준에따라별도계약을체결할수있음.(공동주택분양가에는미포함)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 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등록세 등 제세 공과금 이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함)

-건축 공정상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등으로 인하여 변경 및 추후 선택이 불가능함.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시 관련 법상 내실 발코니가 실외기 실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 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발코니확장세대의 인근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의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벽체돌출, 우물천장사이즈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커텐박스의 깊이, 형태디자인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비확장세대의 상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상부층확장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비확장세대의 발코니천정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세대는 개별발코니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정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음.

-비확장세대의 하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하부층확장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상부층비확장세대의 발코니바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세대는 개별발코니확장을 할 경우에도 발코니바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음.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 형태(돌출/변형) 등이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발코니확장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샤시,유리창표면,벽체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예방에 큰 도움이 됨)

-발코니 외부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선택시 비확장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 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비확장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평면은 발코니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발코니개별확장세대의 개별입주자가 개별시공함으로서 입주후 소음,진동,분진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관리비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발코니개별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책임 소재에 대한 원인규명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발코니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세한 확장공사내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람.

■추가선택품목(발코니확장시에만선택가능)

①천장형시스템에어컨(공기청정기능포함)[단위:원,VAT포함]

주택형	선택안	에어컨설치부위	제품명	업체명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비고
102A	옵션1	거실+주방+침실1	RNW0720C2SP(거실) RNW0200C2SP(주방) RNW0320C2SP(침실1)	LG전자	6,000,000	1,000,000	5,000,000	3개소
	옵션2	거실+주방+침실1+침실2,3	RNW0720C2SP(거실) RNW0200C2SP(주방,침실2,3) RNW0320C2SP(침실1)		8,800,000	1,000,000	7,800,000	5개소
107A	옵션1	거실+주방+침실1	RNW0720C2SP(거실) RNW0200C2SP(주방) RNW0320C2SP(침실1)		6,000,000	1,000,000	5,000,000	3개소
	옵션2	거실+주방+침실1+침실2,3	RNW0720C2SP(거실) RNW0200C2SP(주방,침실2,3) RNW0320C2SP(침실1)		8,800,000	1,000,000	7,800,000	5개소
132A	옵션1	거실+주방+침실1	RNW0720C2SP(거실) RNW0320C2SP(주방) RNW0400C2SP(침실1)		6,200,000	1,000,000	5,200,000	3개소
	옵션2	거실+주방+침실1+침실2,3,4	RNW0720C2SP(거실) RNW0320C2SP(주방) RNW0400C2SP(침실1) RNW0200C2SP(침실2,4) RNW0230C2SP(침실3)		11,000,000	1,000,000	10,000,000	6개소
132B	옵션1	거실+주방+침실1	RNW0720C2SP(거실) RNW0320C2SP(주방) RNW0400C2SP(침실1)		6,200,000	1,000,000	5,200,000	3개소
	옵션2	거실+주방+침실1+침실2,3,4	RNW0720C2SP(거실) RNW0320C2SP(주방) RNW0400C2SP(침실1) RNW0200C2SP(침실2,4) RNW0230C2SP(침실3)		11,000,000	1,000,000	10,000,000	6개소
132C	옵션1	거실+주방+침실1	RNW0720C2SP(거실) RNW0320C2SP(주방) RNW0400C2SP(침실1)		6,200,000	1,000,000	5,200,000	3개소
	옵션2	거실+주방+침실1+침실2,3,4	RNW0720C2SP(거실) RNW0320C2SP(주방) RNW0400C2SP(침실1) RNW0200C2SP(침실2,4) RNW0230C2SP(침실3)		11,000,000	1,000,000	10,000,000	6개소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 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천장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으며, 스탠드형 에어컨(거실) 및 멀티형벽 걸이형 에어컨(102A+107A침실1,2,3/132A,B,C타입의경우침실1,2,3,4)을 설치할 수 있는 매립형 냉매배관으로 설치됨.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거실) 및 벽걸이형(102A+107A 침실 1,2,3/132A, B, C 경우 침실 1,2,3,4)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시스템에어컨 미 선택 시에는 거실+침실 1용과 침실 2+침실 3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형 기존의 매립형 냉매배관 적용으로 2대의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함.(132타입의 경우 침실 2+침실 3+침실 4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형 제품으로 사용)
-시스템에어컨 1안선택시 거실+침실1+주방은 시스템에어컨이 적용되며, 침실2+침실3(102A+107A)는 추후입주자가 멀티형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매립형냉매배관이 적용됨.(132A,B,C타입의경우침실4포함)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실외기는 실외기실 공간에 설치)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제품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지정할 수 없음.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 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음.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냉매배관의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음.(옵션 1선택 시 침실 2,3,132타입 침실 4콘센트 설치됨)
-본시 공시 설치되는 제품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실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는 방의 냉방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으로 가변형 벽체를 확장할 경우에는 실면적이 증가하여 에어컨 용량이 부족할 수 있음.
-에어컨 옵션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 이상 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 제공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 설비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상이할 수 있음.
-상기 시스템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②빌트인가전

[단위:원,VAT포함]

품목	주택형	제품명	업체명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비고
빌트인냉장고	전타입	S711SI24B	LG전자	5,900,000	1,000,000	4,900,000	견본주택전시품목
		BRS665040SR	삼성전자	5,900,000	1,000,000	4,900,000	견본주택전시품목
빌트인김치냉장고		K221PR14BL1/R1	LG전자	1,400,000	300,000	1,100,000	견본주택전시품목
		RQ22K5R/L01EC	삼성전자	1,400,000	300,000	1,100,000	견본주택전시품목
식기세척기		DUB22SB	LG전자	1,300,000	300,000	1,000,000	견본주택전시품목
		DW60T7065SS	삼성전자	1,300,000	300,000	1,000,000	견본주택전시품목
인덕션하이브리드쿡탑		CIHR-D302FB	쿠쿠전자	400,000	300,000	100,000	견본주택전시품목

-추가선택 가전 품목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에만 계약이 가능함
-인덕션 하이브리드 쿡탑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이 설치될 예정임.

③빌트인가구[단위:원,VAT포함]

품목	주택형	제품명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비고
현관중문	102A/107A	3연동슬라이딩도어	1,400,000	300,000	1,100,000	견본주택전시품목
	132A/132B/132C		1,500,000	300,000	1,200,000	
클린존(의류관리기+가구)	전타입	가구+의류관리기(LG전자/S3HFB)	2,100,000	300,000	1,800,000	견본주택전시품목
		가구+의류관리기(삼성전자/DF60T8300WR/L)	2,100,000	300,000	1,800,000	-
드레스룸가구 (드레스룸수납특화형)	102A/107A	시스템선반(상부조명형)+슬라이딩붙박이장+액세서리함	4,900,000	1,000,000	3,900,000	견본주택전시품목
	132A/132B/132C	시스템선반(상부조명형)	2,000,000	300,000	1,700,000	견본주택전시품목
붙박이장	102A/107A	침실3붙박이장	900,000	300,000	600,000	견본주택전시품목
	132A/132B/132C		1,200,000	300,000	900,000	
	132B	침실4슬라이딩붙박이장	1,900,000	300,000	1,600,000	견본주택전시품목
주방가구	102A/107A	주방세라믹(상판및벽체)	3,500,000	1,000,000	2,500,000	-
	132A/132B/132C		4,000,000	1,000,000	3,000,000	견본주택전시품목
	전타입	주방상부장(유리상부장+조명)	800,000	300,000	500,000	견본주택전시품목
	전타입	주방장식장	2,400,000	300,000	2,100,000	견본주택전시품목
보조주방가구	102A/107A	손빨래볼+하부장+상판	1,000,000	300,000	700,000	견본주택전시품목
	132A/132B/132C		1,100,000	300,000	800,000	
보조주방멀티장	132A/132B/132C	멀티장+시스템선반	1,300,000	300,000	1,000,000	견본주택전시품목
우물천장간접등	102A/107A	거실+주방	1,000,000	300,000	700,000	견본주택전시품목
	132A/132B/132C		1,100,000	300,000	800,000	
바닥폴리싱타일	102A/107A	거실+주방+복도	2,000,000	300,000	1,700,000	-
	132A/132B/132C		2,500,000	300,000	2,200,000	견본주택전시품목

- 추가 선택 가전과 가구 품목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에만 계약이 가능함
- 현관 중문 설치로 인해 신발장의 크기, 현관 디딤판의 크기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현관 중문의 사양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상판과 벽체의 세라믹의 이음새 위치 및 패턴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클린존 선택 시 타입에 따라 현관 창고의 사이즈가 변경됨
- 우물천장의 간접 등 미선택 시 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은 설치되지 않으며 우물의 형태 및 사이즈는 변경됨
- 바닥 폴리싱타일은 주방가구 하부에는 설치되지 않음

- 보조주방가구의 멀티장은 보유하고 계신 건조기가 자체물받이 통이 있는 타입일 경우가능함(멀티장설치할경우배수구연결형건조기는설치불가)

④태양열차단필름[단위:원,VAT포함]

품목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설치위치	업체명	비고
태양열차단필름	102A	1,800,000	300,000	1,500,000	전창시공 설치제외위치:실외기실,대피공간,침실1내창	후퍼옵틱코리아	-
	107A	1,900,000	300,000	1,600,000			
	132A	2,300,000	300,000	2,000,000			
	132B	2,300,000	300,000	2,000,000			
	132C	2,300,000	300,000	2,000,000			

-태양열 차단 필름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에만 계약이 가능함
-실외기실, 발코니 내측 창은 시공 부분에서 제외되며, 태양열 차단 필름의 특성상 인공조명과의 간섭에 의한 야간 점등 시 무지개 현상이 생길 수 있음

■추가선택품목(가구,가전,시스템에어컨,태양열차단필름)납부계좌및납부방법

· 납부일정

구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지정일	잔금
공급금액300만원이상품목	1,000,000	계약금액의잔여금	공사부위견본주택및계약시확인필요
공급금액300만원미만품목	300,000	계약금액의잔여금	공사부위견본주택및계약시확인필요

·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별도계약품목	국민은행	069101-04-265234	주택도시보증공사남부피에프금융센터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무통장입금 시에는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단위세대선택품목리스트(기타)

주택형	선택품목(확장형)				세부내용	비고
102A/107A/ 132A/132B/132C	침실2/3	확장형	가변형벽체	선택형1	분리형	
				선택형2	통합형	
	주방	확장형	김치냉장고장	선택형1	일반스탠드형	빌트인김치냉장고미선택시 선택가능
				선택형2	대형스탠드형or뚜껑형	
	침실1	확장형	파우더가구	선택형1	입식파우더	
				선택형2	좌식파우더	

▪가변형 벽체는 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하며, 통합형 선택 시 침실 벽지는 침실 3기준으로 설치됨
▪유상 옵션 가전 빌트인 김치냉장고 선택 시 김치냉장 고장 선택은 불가함

■공동주택마이너스옵션(기본선택품목)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 품목 선택은 불가함)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 순서에 의한 기본 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 절차」중 당첨자 선정 발표 시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품목	마이너스옵션선택시시공되지않는품목	마이너스옵션선택시기본제공품목
1)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포함>거실,주방/식당,복도,침실전체,드레스룸,파우더 <엔지니어드스톤및타일>현관 <타일>욕실(시멘트몰탈포함),발코니/보조주방(세탁실),실외기실	바닥난방(욕실난방배관시공부위만해당),욕실및발코니/보조주방바닥방수,배수슬리브,우수,배수,선홈통
2)벽,천장	<벽>벽지(초배지포함)및벽체마감,거실아트월타일,주방타일,세라믹및욕실락패널,스위치,콘센트등마감포함 <천장>천장지,반자돌림(몰딩포함),단천장(몰딩등마감일체)	단열+석고보드/미장/콘크리트면처리 천장(천장틀,석고보드),커텐박스,스프링클러배관및헤드,소방화재용감지기 세대환기설비(장비,덕트,디퓨져)
3)조명기구,배선기구	각실조명기구,배선기구일체(욕실포함)	배관,배선(콘센트,스위치),네트워크스위치,일괄소등스위치
4)욕실	<위생기구>비데,양변기,세면기,욕조,욕조틀,수전류등 <욕실인테리어>욕실락패널,천장재(천장틀,배기휀포함),샤워부스,잰다이, 액세서리,욕실장,스위치,콘센트등마감일체	방수(바닥,벽체),설비배관(급수,급탕등매립배관),욕실배기덕트, 바닥배수슬리브,전기및통신배관배선
5)주방	주방가구및가전류일체(주방상판,가스쿡탑,전기오븐,액세서리일체포함),설비수전류(수전포함),주방TV	설비배관,소방관련시설 전기및통신배관/배선(주방TV폰등의전기입선),주방배기덕트
6)창호	문틀(상부덧판,문선포함)및문짝(사춤및욕실문하부씰포함,하드웨어포함)	목재및ABS도어(공문틀포함)의가틀및사춤,PVC내부창호, 세대현관방화문,디지털도어락,실외기실도어
7)가구및기타사항	가구류일체(신발장,파우더장(상판및조명포함),현관창고도어및가구(시스템가구포함),드레스룸도어및가구(시스템가구포함),붙박이장,주방가구(상판및수납장일체),시스템선반(세탁실),수전류일체(발코니,세탁실)	월패드,에어컨매립배관(침실1,2,3,4(102A,107A는해당사항없음),거실)

■마이너스옵션금액[단위:원]

주택형(㎡)	102A(101동~104동)	102A(105동~107동)	107A	132A	132B	132C
금액	34,936,000	34,535,000	35,982,000	44,175,000	43,938,000	43,938,000

■마이너스옵션선택및시공을위한유의사항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시공하는 방식임(단,상기마이너스옵션계약은품목별,실별,위치별로선택할수없으며일괄로선택하여야함)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 옵션계약의 경우 공사상상이점(바닥마감,벽체,벽지,방수,단열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함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하거나 계약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마이너스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확장과 선택형의 칸막이제거(변경)를 개별시공할 경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사용검사완료 및 잔금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규정에 의거 최초입주가능일부터 60일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마이너스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함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옵션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완료 후에 가능함
-마이너스옵션 계약이후 마이너스옵션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금액(일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함(하자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마이너스옵션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관련된품목 / 단열공사·방수공사·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마이너스옵션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건축법제52조」,「건축법시행령제61조」,「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4조」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마이너스옵션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기준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배선기구류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제외한바닥,벽체두께등)은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마이너스옵션선택시 기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 공사과정에서 탈부착됨으로 인하여 초기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 부터60일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유무를 확인하여야함
-마이너스옵션부분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음
-마이너스옵션시공시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마이너스 옵션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하며, 하자 발생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마이너스옵션은 별도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기본선택품목 선택을 희망하는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기본선택품목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마이너스옵션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Ⅷ 유의사항:다음의유의사항을반드시확인하고숙지하시기바라며,미확인에따른이의를제기할수없음

■일반공통

당 아파트의 경우**(사업계획승인2021-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규정은 최초사업 계획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음.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음.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주택규모표시 방법을 평형대신 넓이 표시법정단위인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환산방법 : 주택형별면적(㎡)x0.3025 또는 주택형별면적(㎡)÷3.3058]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소수점5째자리에서절삭함), 연면적과 전체계약면적과는 소수점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2009.4.1.「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으로 주택형표기방식이 기존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음.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함)

•본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시공사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

•사이버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 공사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되며, 실별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공용부분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음.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람.

•이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견본주택내에는 양가포함품목과 전시용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용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동호별 등의 공급금액상 이로인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이의없이 동의함.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음.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내 외부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함.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써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세대내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선반의 배치에 따라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견본주택은 사업주체의 분양일정 및 운영사정에 따라서 입주예정자들의 사전동의 또는 안내없이 철거될 수 있음.

•청약 및 계약전 사업부지 내·외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향후 주변 고층건물등의 건설 및 주변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계약체결 후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시행사, 위탁사,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없음.

•단지주변의 도시계획도로는 향후 사업시행자 및 인허가 관청의 일정에 따라 각 도로의 개발 및 개통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며 지연, 변경(도로폭, 위치, 레벨 등) 또는 취소될 수 있음.[입주시기와 도시계획도로의 개통시기는 상이하므로 해당 관청문의바람]

•사업승인 및 본공사진행 후 준공시까지 설계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본 공사시 견본주택에 시공된 무늬, 형태, 색상, 두께와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층별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의 경우 동급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입주자모집공고문상의 문구 중 사업주체의 고의가 아닌 착오,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일부표기가 잘못될 수 있으므로,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재확인할 수 있음.

•대지면적은 예정도에 의한 현황 측량결과로 산출된 것이며, 준공 후 시행하는 지적 확정 측량시 면적이 감소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금액정산은 없음.

•단지 외부교통시설물과 관련한 사항은 지자체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되어 진행될 수 있음(최초지구단위 내용과 달리 당 단지 및 주변단지 인허가과정 및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부지와 관련한 각종평가(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한 내용 중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인근 초등학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감소, 인근 학교분산배치 우선 검토 등으로 교육부의 학교설립심사기준이 강화되어 설립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설계관련 및 기타유의사항[아래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변경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내부여건

•공급안내문, 분양관련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카탈로그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내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특히 분양홍보자료에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내 주변의 건축물(주상복합및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등)이 표현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자께서는 반드시 주변현황을 확인하기 바람.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내용(세대내·외,공용부분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전·후 최종사업변경승인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사업지구내 및 그 외 타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련법령에 의함.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인허가과정이나 실제시공시 여건에 따라, 단지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조경석쌓기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위치·재질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정산하지 않기로 함.)

•건축심의 내용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내 일부도로는 보·차도 혼합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이 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출입구형태에 따라 동현관 및 장애인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배치특성상, 단지내 도로(순환로포함)는 일부 경사진 도로와 계단이 발생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면에 설치되며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 및 환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101, 104동 옥상에는 소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음.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 2의 및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제24조 2 등에 의거하여, 기간통신사업자협의대표인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이 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협의하여, 이동통신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바람.(이동통신설비설치예정위치 - 옥외안테나 : 101,3동 / 중계기설치위치 : 101,3동옥상층, 지하1층 : 휀룸#6)

•단지 및 공동주택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지하주차장은 동별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배분 등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음.(주차계획상 동별로 균등분배되지 않아, 일부 동은 먼거리에 주차되어 이용상 불편이 있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는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주동 필로티의 상부 캐노피설치 위치(개수)는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포함) 및 기계/전기실 등은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실 배치형태, 내부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세대의 경우는 이삿짐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단지내조경및조경수식재위치는입체적단지조화를고려하여설치나식재위치가변경될수있으며(단,조경식재대상,규격이나수량의변경이있을시당초계획보다동등이상으로시공됨),관계기관심의결과,시공과정등에따라조경시설물에따른조경선형이나포장및조경시설물의재료,형태,색채,위치는변경될수있음.

•단지 내·외부의 조경석 쌓기, 옹벽위치 및 형태, 계단의 위치 및 형태 디자인은 준공접수 인허가과정 또는 현장주변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인접거주군의 민원 및 기타사유로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출입구의 위치 및 디자인은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폭,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차에 따른 계단의 형태 및 위치, 옹벽의 형태 및 위치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음.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커뮤니티시설, 지하층층고, 일부지하주차장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 보수 /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용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가 상이하니 계약전 필히 해당 세대입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아파트 1층 로비평면계획(지하층로비 / 복도포함)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설계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코아평면 및 창호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중 설계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지하층 피트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설치 등 소방활동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며, 안전매트구간은 준공시 변경가능하므로 반드시 단지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람.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휴게공간,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평면 계획상 부득이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 등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면하게되어 엘리베이터 운행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홀과 현관문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따라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각 엘리베이터 내부디자인은 수자인 전용 표준디자인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2개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는 지하1, 2층에 이루어짐(근생주차지상층)
•지하 1층 주차출입구의 높이는 2.7M이며 주차장의 차로폭은 약6M임 (대형화물차,사다리차등의진입이불가능함)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와 옥외주차장(근생전용)의 합산대수로 각 동별 주차대수를 인정하지 않음.
•각 동 주차대수를 임의로 산정할 수 없으며 실제이용에 있어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따라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은 장애인주차, 확장형주차, 경형주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 및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주차계획상 동별로 균등분배 되지 않으며, 이로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규격은 주차장법에 의한 법적기준에 의한 규격이며, 위치에 따라 기둥, 벽체 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무인택배시스템은 지하주차장 지하1층에 설치예정이며, 이용을 위한 동선은 위치에 따라 동별로 길어질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동출입구에 설치된 우편물수취함의 위치, 개소,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경계부 일부구간에 옹벽 및 조경석쌓기, 계단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형태는 준공접수 인허가과정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외부 단차이 및 주변레벨에 따라 조경석쌓기, 옹벽, 계단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1층 필로티의 보행자 진출입로는 동출입구 형태 및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내 조경 및 각종시설물(DA, 쓰레기분리수거함, 재활용창고, 자전거보관소 등) 및 마감재 등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모형, CG에 표현된 주변현황(도로및주변건물 등)은 이미지로서, 준공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변의 실시계획변경 및 공사중변경될 수 있음.
•모형에 표현된 단지 경계선 외부공간[북측면완충녹지 및 41M도로, 서측면15M도로 및 공원, 동측면22M도로], 주변도로(도로, 자전거, 보행자)]의 형태 및 레벨계획은 향후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음.
•입주이후 단지주변의 도로에 의해 소음 및 분진, 진동, 교통체증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주변은 향후사업자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준공시향, 조망,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 공사(ex_태양광전지판, 집광채광블라인드)설비의 구조 및 형태는 미관,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음.
•단위세대 침실에 설치되는 집광채광블라인드는 돌출발코니(105. 106. 107동)가 설치되는 107A타입의 경우 돌출발코니가 있는 실에 설치되지 않고 옆실에 설치됨.(집광채광블라인드자연광으로 인하여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 단지는 지하2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및 지상층을 통하여 지하1층으로 진입하는 구조임.
•본 단지는 남서측에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남동측에 보행자출입구, 근생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북측에는 완충녹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출입구에 인접한 106동 및 107동, 부출입구에 인접한 104동 및 105동,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인접한 101동 및 107동은 차량의 진출입에 의한 '소음및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남서측 주출입구는 도로와 단지 레벨차이로 인해 계단 및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지구단위계획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와 인접한 105동 저층부세대는 수직동선으로 인한 소음 및 환경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주변의 완충녹지, 주변도로 등은 인허가 관청 및 수자원공사에 의해서 조경 및 레벨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은 단지주출입구(남서측), 부출입구(남동측)와 인접하여 각 15M, 22M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세대(특히107동)에서는 소음 및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입주민이 근린생활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지반층(1층)에서 근생공용부위로 접근하는 보행자동선이 있음.
•준공시 안전매트구간계획에 의하여 조경식재의 종류/위치, 보도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준공시 토지면적은 확정측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및 대지의 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하며 주차는 단지내에 별도구획(근생주변옥외주차장)되며, 이에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점시설에 따라 냄새 등으로 인한 주변동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근생의형태(높이및크기, 면적등)는 고시된 도로선형에 준하여 설계된 것으로, 추후 근생형태 및 주변현황은 분양자료와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주차는 107동 후면에 9대(조업주차 1대 제외)가 설치되어 있고 주차로 인한 소음 및 환경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세대내부칸막이벽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있어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해야하며, 건식고정벽체임.
•액체방수시공시 액체방수두께는 준공도면에 달리 기재하지 않는 한 "시멘트모르타르계방수공사국토교통부국가건설기준표준시방서KoreanConstructionSpecificationKCS 41 40 08 : 2016"에 따라 액체방수 두께기준4mm를 충족하여 시공함.
•세대전용부 및 공용부타일 시공시 타일 뒷채움기준 80%를 충족하여 시공함.
•단지차량출입구 차단기위치 및 진출입선형, 근린생활시설의 옥외조경구간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인해 싱크대하부공간에 수납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며 부분수정될 수 있음. 온수분배기 설치위치의 가구뒷판과 하부바닥마감은 시공되지 않음
•수분양자의 계약세대 상하좌우세대중 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이너스옵션세대가 없을 경우와 다른 단열, 마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면적, 마감방법의 차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련법령에 따름.

•지구단위지침 / 건축심의 의견에 따라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로 계획하였음.
•북측 완충녹지구간은 단지레벨차이로 인해 녹지내 조경석쌓기와 옹벽이 계획되었으며 보행자가 단지진입시 계단 및 경사로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단지의 마을명, 동표기 등은 지구단위지침 및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름.(당 사업지는 지구단위지침상 건물측벽에 마을 이름 및 주동번호만 표기할 수 있으므로, 건설사브랜드(BI)는 설치가 안됩니다.)
•지구단위지침 / 건축심의 의견에 따라 보도연접형 전면공지에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로 계획하였음.
•한전 PAD예정 위치는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기차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기차충전시설은 급속2대, 완속12대, 이동형콘센트25EA를 지하주차장내에 설치하며, 입주 후 충전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함.

■세대/디자인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상이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공사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시공됨.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류)는 동급의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타일, 락패널, 석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에는 가스배관,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구조형식 등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단위세대에는 대피공간이 없으며, 하향식 피난구 및 실외기실이 설치되어 있음
•단위세대(132A, B, C TYPE) 하향식 피난구는 별도의 도어가 설치되어 있음
•단위세대 102ATYPE 침실2 기둥은 고층 : 500mmx1,000mm(101, 102, 103, 104동)과 저층 : 500mmx800mm(105, 106, 107동)의 기둥사이즈가 상이합니다(실내부사용면적이 상이합니다.)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본 공사시 타일, 석재 등 천연소재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본 공사시 세라믹, 폴리싱타일의 경우 재료와 패턴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되는 것이 불가함.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마루의 코어재(바디재)는 변경될 수 있음.
•다음 각 목의 세대 내부가구 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가.욕실장 및 욕실거울후면에는 락패널이 시공되지 않음.
나.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다.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 또는 세라믹이 시공되지 않음.
라.주방가구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마.신발장 및 붙박이장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도배지, 천장지, 강마루등)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 난방분배기에 연결된 노출난방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온수 분배기 가림판 설치위치는 본공사 시공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씽크대하부 및 가구설치로 가려지는 부분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본 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임.
•보조주방(세탁실)은 별도의 천장마감이 없으며,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주방상부장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임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 주방가구의 상부장이 가스미터기 설치위치와 겹치는 일부타입의 경우 상부장의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단위세대 마감자재내용은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주방가구 및 고정형가구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욕실 및 발코니 배수구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형태변경이 있을 수 있음.
•침실1 도어에는 모티스타입, 그 외 도어는 프라이버시타입의 도어락이 설치되며, 도어하부는 오토실이 설치되지 않음.
•본 공사시 침실, 욕실 문에 한해 고정 부모서리1면에 손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될 수 있음.
•견본주택세대입구는 전시용프레임으로 문틀이 미설치되었으며 본공사시 문틀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본공사시 방화문프레임 두께는 달라질 수 있음.
•세대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시공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음.
•발코니, 욕실 등 다운부위는 실시공시 바닥구배 등으로 인해 위치별로 단 높이차이가 있을 수 있음.(견본주택과 단높이차이가 상이할 수 있음.)
•욕실천정내부에는 락패널이 시공되지 않음.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하며, 철거전에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 할 예정임.
•견본주택내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주변공동주택단지 및 현황 등은 현장과 상이할 수 있음
•입주자선택에 의해 발코니확장, 비확장에 따라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입주 후 불법구조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개별인테리어공사를 할 경우는 중도금대출 및 분양옵션잔금을 완납 후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 인공용 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은실 공사 시 사용승인 도서에 따라 시공됨.
•동일 평면타입이라도 해당 층, 호(측세대여부등)에 따라 외부창호, 단열재시공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마감자재는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팜플렛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수준을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건물 외부, 엘리베이터홀/복도 주현관, 지하주차장, 지하층 홀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관련 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각 종포 장부 위의 재질, 색상 및 문 양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 발코니에 설치되는 바닥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수전이 없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실외기실은 우수 설비 설치됨)
•본 공사시 세대마감자재(수전및액세사리류)의 설치위치는 마감 치수 및 사용자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높이는 일부변경될 수 있음.
•마감재내역은 팜플렛 및 마감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세대의 발코니, 가구 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기, 스위치, 통합 일괄소등 스위치, 전열교환기, 홈네트워크 및 수전+금구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금회 공급세대의 마감재리스트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 디자인 등 카다로그에 미표기사항은 사업승인변경최종도서에 따라 시공함.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를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과 정이나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감지기, 유도등은 견본주택소방시설로 실제 시공 시 변경, 미설치, 추가 설치될 수 있음.
•발코니/욕실/현관 등단차 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본공사 시세 대목 창호문선에 도배 홈이 설치되고,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 은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 여일 부디 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본공사시 거실, 발코니, 주방, 욕실, 현관 등의 타일류는 줄 눈 및 패턴(나누기)이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102A타입과 132B타입의 유리벽은 견본주택 연출을 위한 전시품목으로 본 공사시 유리벽은 설치되지 않으며, 전시 유리로 인해 미설치된 102A타입의 분전함 및 132B타입의 조명스위치와 배선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됨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 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 내부의 커튼 박스 높이는 천장 설비에 따라 실별로 상이할 수 있음.
•세대 내부 침실 2,3벽체 통합형 옵션 선택 시 콘센트 설치 위치 분리형과 상이할 수 있음.
•세대 내부의 콘센트 및 통신 수구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세대 내부 유상 옵션(주방, 거실 우물천정) 선택에 따라 스위치 회로수가 변경될 수 있음.
•실외기실 시스템 전동 루버의 전원 위치는 세대 타입별로 변경될 수 있음.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되는 곳의 위치에 따라 조명기구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확장시 확장부분의 외부샤시는 이중창호 또는 단창등으로 설치되나, 향후 창호사양(제조사,브랜드및창틀,하드웨어,유리등)이 변경될 수 있음.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 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 배치도, 면적 및 도면 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계약자가 희망하는 규격(용량)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및 가구 등 이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음.
•견본주택 세대내 설치된 거울은 세제등 생활용품(알카리성화학성분)의 사용상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변색될 수 있음.
•발코니 비 확장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 및 확장 유상 옵션 형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당 현장은 에어컨매립배관이 전실(거실,침실1,2,3,(132타입의경우침실4포함))에 설치되는 현장으로, 옵션시스템에어컨선택에 따라 매립배관설치개소가 달라질 수 있음(옵션시스템에어컨1안선택시침실1,거실에어컨매립배관제외/2안선택시전실제외.)
•기계실 없는 승강기 설치에 따른 최상층의 승강기 버튼 하부에 제어반이 설치되며, 기준층 승강기 버튼 박스와 디자인 이상이 함.
•엘리베이터 와인 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비확장형 선택 시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음.
•실시공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 배관 설치 등에의 하여도 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함.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주방 TV는 싱크대 상부장 하단에 설치되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됨.
•발코니에 설치 전동 빨래건조대는 등 기구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발코니 등과 스위치(배관배선 포함)는 설치되지 않음.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 로비 확장 선택 시일 부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등이 계획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확장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확장세대의 확장발코니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발생 및 일부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상부 세 대비 확장 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튼 박스 깊이, 등 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동일한 평면이라도 각동 라인별로 실내폭 치수가 상이하니 동평 면도를 충분히 확인하고 인지하여주시기 바람.
•실내 점검 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환기장치가 동시 운전 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 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 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사업변경 승인 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실외기실,앞발코니,보조주방등)의 내부폭은 같은타입이더라도, 중간세대+측세대+꺾인세대 등의 동조합에 따라 안목치수가 일부법적인 오차내에서 달라질 수 있음.
•당 현장은 욕실 벽에 락 패널로 마감되며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락 패널은 패턴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동일한 패턴으로 시공이 불가 할 수 있음.
•단위세대는 측세대, 중간세대의 위치에 따라 벽체공유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의 안목치수가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세대 내 설치된 현관 중문의 사양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음.
•주택법제54조에 의거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 예정자에게 안내할 예정임.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주택법」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단위세대 107A TYPE(105,106,107동) #침실 2,3중 한 곳에 돌출발코니가 설치 됨

동	호	침실#2	침실#3	비고
105동(107TYPE)	3호라인	홀수층(3,5,7,9,11층)	짝수층(2,4,6,8,10,12층)	3호라인1층은필로티
	4호라인	짝수층(2,4,6,8,10,12층)	홀수층(1,3,5,7,9,11층)	
106동(107TYPE)	5호라인	홀수층(1,3,5,7,9,11층)	짝수층(2,4,6,8,10,12층)	
	6호라인	짝수층(2,4,6,8,10,12층)	홀수층(3,5,7,9,11층)	6호라인1층은경로당
107동(107TYPE)	5호라인	홀수층(3,5,7,9,11층)	짝수층(2,4,6,8,10,12층)	
	6호라인	짝수층(2,4,6,8,10,12층)	홀수층(3,5,7,9,11층)	5,6호라인1층은근린생활시설

(돌출발코니창호는분합창이설치되고,창호시스템상창호잠금장치는자동이아니고크리센트타입으로설칟됨)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며, 층간 소음·진동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바닥 충격을 성능 등급은 국가 공인 표준 시험동에서 시험한 완충재의 시험 성적서에 따른 등급이므로, 추후 실제 세대의 성능과 다를 수 있음.

■제공/전시품목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 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 외부창호는 본 공사 시제 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 설치된 생활 가구류(거실장, 침대, 테이블,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 전시 조명등은 견본주택 연출을 위한 전시품목임.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견본주택 내 설치된 월패드 내 표현되는 GUI 디자인은 예시로 표현된 사항이므로 본 제품 설치 시 변경될 예정임.
•견본주택은 확장 및 일부 유상 옵션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 선택한 유상 옵션에 따라 시공됨.
•견본주택세대 가구도어에 부착된 글씨 안내문구는 견본주택 연출용으로 본공사시 부착되지 않음.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임.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 제품은 견본주택용의 냉난방 겸용 제품으로 실제 유상 옵션 제품과는 상이하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확장형 선택 시 유상 옵션 사항임.(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임)
•침실1(안방)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분합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외측에면한창호만방충망설치)
•부부욕실 바닥 배수구 위치는 샤워부스 안에만 설치됨(세면대 하부에는 없음)
•부부욕실 샤워부스 하부는 바닥과 밀착되지 않으며, 샤워 시안에서 밖으로 물이 흐를 수 있음

■환경권
•「건축법」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 상동별, 향별, 층별 차이 등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과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하여 각 세대의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권익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이를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 외부형태(도로 및 공원, 연결녹지, 주변 상황 등)은 실시 계획인가 변경,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으로 준공 시 모형/CG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지 주변 북측 면 완충녹지 및 41M 도로, 남서 측면 공원(레벨 및 식재 계획은 수자원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가있으며,(사업시행사 및 인허가 관청의 개발계획 일정에 따라 준공시기 및 개발 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계약자께서는 반드시 주변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 현황은 인허가 관청 및 해당 사업자의 사업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상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권익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본 공동주택단지 내 동별, 세대별 일 조수인 양의 차이가 있으며, 일부 세대는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총 일조시간의 합이 4시간 이상이거나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일조와 관련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에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음.
•공동주택의특성상층간,세대간소음피해등이발생할수있으며공공장소인휴게공간과수공간,필로티,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부대복리시설,D/A(설비환기구,제연급기구),생활폐기물보관소,관리동,주차램프,문주등의설치로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침해등이발생할수있음.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 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 내시 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도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특히 주출입구 인접한 106동과 107동과 차량비 출입구에 인접한 104동과 105동, 근린생활시설 및 주출입구 101동과 107동은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배치특성상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램프포함)와단지내비상차로등에인접한동및저층부세대에는차량소음및전조등에의한사생활권등의각종환경권이침해될수있음을확인하고,청약신청및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이로인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음.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지하층에는 우수저류조(104동),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 발생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단지 내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천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쓰레기 분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설치 인근 세대는 폐기물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 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 권익 침해될 수 있으므

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해당 시설의 위치 및 내부 계획은 시공 시다 소 변경될 수 있음)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재활용 분리수거함+생활폐기물+음식물 수거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접한 세대는 설치로 인해 환경권(시야 간섭, 악취 등)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용 1개소(107동 후면 근생 주차 장부)
-공동주택용 7개소(101동측 벽:1개소/102동 비상차량 동선:1개소/103동 비상차량 동선:1개소/104동 후면:1개소/105동 후면:1개소/106동 후면:1개소/107동 후면:1개소)
•자전거 보관소는 총 16개소에 190대 설치 예정입니다. 설치되는 세대와 인접하여 환경권 침해(시야 간섭 및 소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필로티 내부 20대/102동 필로티 내부 20대/103동 필로티 내부 10대+옥 외 10대/104동 필로티 내부 20대/105동 필로티 내부 10대/106대 필로티 내부 20대/107동 필로티 내부 20대/
어린이 놀이터 1,2, 옥외 20대, 주민운동시설 옥외 10대, 어린이집 옥외 10대, 관리사무소 옥외 10대(총 50대)/근생 후면 옥외 10대
•아파트 옥탑, 지붕, 외벽 등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 공청 안테나, 피뢰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을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빛의 산란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음.
•101,102,103동사이및103,104동사이에는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놀이터가 있으며 이에따라 소음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받을수있음.
•105동은 공공보행통로 의해서 피로티내 계단 이용시 소음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받을 수 있음.
•101동102동103동사이에는어린이집,101동부출입구망스스테이션이있어 이로인해 인접한세대는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차량출입구에 위치한 106 동 및 107동,차량 부출입구에 위치한 104동 및 105동,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101동107동은 지하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 으로 출입하는 차량에의해 소음 및 전조등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받을 수있음.
•경로당은 106동 남서측1층, 재능나눔공간은 106동남서측1층, 알파스페이스는 105동남서측1층에 위치하여 저층세대에 소음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상가 옥외주차장 107동 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차량에 의해 주변 세대에 소음 및 빛공해,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7동은 22M, 15M 도로와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하여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냄새 등으로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는 향후 사업시행자 및 인허가 관청의 일정에 따라 각도로의 개발 및 개통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며 지연, 변경(도로 폭, 위치, 레벨 등) 또는 취소될 수 있음.[입주시기와 도시계획도로의 개통시기는 상이하므로 해당 관청 문의 바람]
•모형에 표현된 단지 경계선 외 부공 간[완충녹지, 중앙공원, 보행자 도로, 주변 공동주택용지, 주변 도로(도로, 자전거, 보행자)]의 형태 및 레벨 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실시 계획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경 및 토목 옹벽의“형태 및 색상,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01,2,3,4,7동,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지붕에 설치되는 구조물(태양광 집광판 포함)에 의해 일부 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의 침해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 고층 세대는 태양광 집광판 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발전기실 D.A는 101동 및 주민운동시설, 산책로 주변에 위치하여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 도로 및 시설물은 부산광역시 및 수자원공사에 개발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대시설 및 근생과 인접한 세대에는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부산 에코델타시티 단지 북측에는 김해공항이 위치하여 이로 인한 환경 침해(소음, 진동 등)가 발생하며, 당한지는 준공시점에서 주변 공사현장의 시공이 진행되어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단지 주변의 완충녹지계획에 따라 대지 경계 주변이 조경석 계획은 변경(삭제 또는 수량 조절) 될 수 있습니다.

■외부환경디자인
•단지내조경,동현관,지하출입구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형태,재질,색채등이각기 다를수있으며,상기사항은 입주자의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수없음.
•주동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상위지침변경 및 인허가과정중입주자동의없이 변경될수 있음.
•외부시설물의위치,색채,재질,디자인 은본공사시 변경될수있음.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 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배치,구획,면적,모양등의차이가있을수 있음.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주변환경,부지고저차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단지보행출입구,차량진출입로는기존도로의 선형경사도에 따라 본공사시 일부변경 될수있음.
•주동의 색채계획은 추후인허가과정 및 실시공시 다소변경 될수있음.
•아파트저층부 외벽마감은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함.
•외부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등이 세대외벽에 설치될수있음.
•주동의 입면줄눈계획은 추후인허가 및 실시공시 변경될수있음.
•아파트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후면발코니 및 옥탑상부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수 있음.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투시도,이미지컷등에 표현된 아파트입면에는 실제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등 세부디테일이 변경될수있음.
•주동 및 지붕층에 설치되는 구조물(태양광집광판포함)에 의해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의 침해될수 있으며,일부인접 고층세대는 태양광집광판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수있음.
•주동저층부(3개층이하)는 석재 및 뿜칠 수성페인트, 필로티 내부공간은 수성페인트 및 석재뿜칠,고층부는 수성페인트,외부노출옹벽등은 수성페인트 및 석재뿜칠로마감.
•옥상조경식재,형태,면적은 인허가 및 실시공시 변경될수있음.
•옥상구조물의형태는 실시공시 디자인 및 구조물이 변경될수있음.
•준공이후조경(옥상조경포함)관련유지관리공사의 시행주체는 입주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 또는 관리사무소에 있으며 인수인계시 드리는 유지관리계획서 및 지침서를 참고하여 관리하시기 바람.
•단지의마을명, 동표기등은 지구단위지침 및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라변경 될 수있음.
•외부창호디자인,개구부및프레임사이즈,유리,안전난간등은성능개선,안전성에 따라 공사시 일부변경 될 수있음.
•문주의형태는 실시공시 일부변경 될 수있음.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은 공간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면적조정 또는 실배치가 변경될수있으며, 분양시 홍보물, 모형,이미지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시공시 재질,색상,디자인,수량이 다소 변경될수 있음.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계획은 인/허가과정이나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입주시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 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마감재 및 그래픽등은 변동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추후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알파스페이스, 재능나눔공간, 바이크스테이션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관계법령(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지구단위지침)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음.

•분양홍보용CG, 견본주택내 모형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로서 추후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장애인관련법규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단차등이 변경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입주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위치, 크기,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1동 102동 103동 사이에는 어린이집 및 101동측면에는 망스스테이션, 용역원휴게실은 105동 지하층에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는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105동 전면에 알파스페이스,106동 전면 지상층에 경로당, 106동 전면에 재능나눔공간, 107동 필로티에 바이크스테이션, 지하층에는 통합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지하층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은 일조 및 환기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본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련법령에 따름.

■학교관련 유의사항

•당 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중 초등학생은 초5(가칭,개교예정:미정)"에 배치예정임, 사용검사 이후 입주(2024년06월)이후부터 개교(미정)예정까지 유발되는 학생의 수요에 따라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명일초등학교(입주시기학생배치 계획에 따라 변경가능)에 배치할 예정이며, 통학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할 예정임. 개교시기에 따라 배치초교는 변경될 수 있음.

•중학생은 가칭"중4(개교예정:미정)"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중학군(단일학군)내 인근중학교 분산배치가 가능함.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은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의 학교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등에 의하여 추후변경 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고등학교 설립 및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단지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및4항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변환경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중 교통/교육시설/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취소·변경·축소·지연될 수 있음.(필히 해당 개발사업 주체문의, 확인하시기 바람)

•해당지역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며 항공기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분양관련 모형 및 자료에 표기된 도로폭은 도시계획선 및 교통영향평가 기준의 도로폭이며 현황도로폭은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전 확인 바람.

•단지의 차량 주출입구와 차량 부출입구가 교통량에 따라 진출입시 교통혼잡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주택분양및거래(입주)시안전관련정보제공

분야	법적의무사항	추가및보완제공내용
화재	스프링클러설치	1.전층스프링클러설치 2.자동화재탐지설비및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
풍수해	지하주차장침수방지	지하주차장집수정에배수펌프설치
지진	내진설계	건축구조설계기준KBC2016
방범	CCTV설치	지하주차장및어린이놀이터,자전거보관소,1층홀및최상층에카메라설치
장애인안전	장애인이동통로	출입구경사로,점자블럭
어린이안전	놀이터안전등급	안전인증검사에통과된놀이시설물설치및어린이낙하에안전한두께의탄성포장재사용
노약자안전	보도블럭미끄럼방지	안전한보행성확보를위해표면가공을통한미끄럼방지기능을가진포장재사용

■홈네트워크관련시스템설치항목

구분	기준	설치항목(1)	설치항목(2)
항목	1	배선	차량통제기
	2	예비배관	욕실폰
	3	집중구내통신실면적	주방TV
	4	통신배관실(TPS)	일괄소등제어
	5	단지서버실	디지털도어록
	6	폐쇄회로TV장비	엘리베이터호출연동제어
	7	가스밸브제어기	현관도어카메라
	8	조명제어기	무인택배시스템
	9	난방제어기	대기전력차단장치
	10	현관방범감지기	환기장치제어
	11	주동현관통제기	-
	12	원격검침전송장치	-

IX 기타사항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 제도실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1조제3항에의한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가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1~2개월전에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입주예정일

-입주예정일:**2024년06월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통보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하며, 이경우선납할인은적용되지않음)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등이 지연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가든카페,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목적체육관, 키즈맘센터, 작은도서관,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

-일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은 조경 및 시설물계획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내 모형도 및 CG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음.

■하자여부는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하자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각공정별 하자 담보 책임기간내 시공상 이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친환경주택의성능수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 무사항이행여부

구분		적용여부	비고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의한단열조치준수
	바닥난방의단열재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의한바닥난방에서단열재의설치준수
	방습층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의한기밀및결로방지등을위한조치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호제3항제2호)	설계용외기조건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없는경우제외)	적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의한외기조건준수
	열원및반송설비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의한열원및반송설비조건준수
	고효율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제품또는최저소비효율기준을만족하는제품사용
	고효율난방,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급탕및급수펌프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받은제품을사용하거나그평균효율이KS규격에서정해진기준표율의1.12배이상의제품을사용
	절수형설비설치(바목)	적용	세대내설치수전류는수도법제15조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별표2에따른절수형설비로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내에는각실별난방온도를조절할수있는온도조절장치설치
전기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의한수변전설비를설치
	간선및동력설비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의한간선및동력설비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의한조명설비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4호에의한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설치
	공용화장실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내의공용화장실에는화장실사용여부에따라자동점멸스위치설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제3항에 의거(공동주택성능등급및친환경주택의성능수준표시)인증서

녹색건축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부산 에코델타시티 공동21블록 공동주택	인증번호	G-SEED-P-2021-0546-6
건 축 주	에코델타비에스피에프브이㈜	인증기관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준 공 일	2023.06	유효기간	2021.06.04.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공동21블록 일원	인증 등급	
층 수	지하2층, 지상24층	인증등급	우량(그린3등급)
연 면 적	117,882.8627㎡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 기준(2016-4)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		[별표1]신축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설 계 자	㈜나산종합건축사사무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 그린3등급)건축물로 입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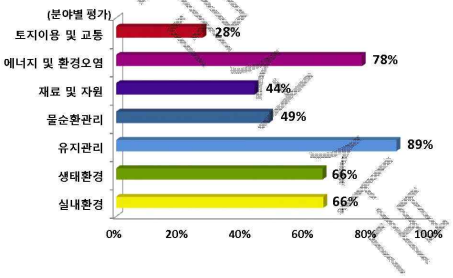

종합등급 ★ ★ ☆ ☆

2021년 06월 04일

(사)한 국 그 린 빌 딩 협 의 회 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부산 에코델타시티 공동21블록 공동주택
2. 신 청 자: 에코델타비에스피에프브이㈜
2. 대 지 위 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공동21블록 일원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우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우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침 정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관련 조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6월 4일

(사)한 국 그 린 빌 딩 협 의 회 장

210mm×297mm[백상지 120g/㎡]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부산 에코델타시티 공동21블록 공동주택	인증번호	21-주-에-1++-0007
준공연도	20231031	평가자	오성찬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공동21블록 일원	인증기관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층 수	지하2층 / 지상24층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117882.8299(㎡)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인증등급	
설계자	(주)나산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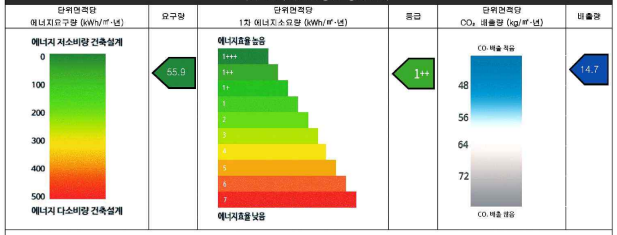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18.7	25.7	20.1	4.4
급탕	30.7	36.1	26.8	6.0
조명	6.5	5.9	16.3	2.8
환기		3.2	8.9	1.5
합계	55.9	70.9	72.1	14.7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 년 06 월 03 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장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의분양가격공개

·주택법」 제57조및「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 제15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가격은"분양가심사결과상한금액"미만으로책정되었습니다.

·분양가격공시내용

[단위:천원,VAT포함]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74,370,960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39,196,000	공사비	기계설비	위생기구설비공사	1,917,000
		기간이자	6,054,371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3,458,000
		필요적경비	3,272,322			조적공사	4,113,000			가스설비공사	754,000
		그밖의비용	-			미장공사	3,392,000			자동제어설비공사	164,000
		계	83,697,653			단열공사	1,262,000			특수설비공사	-
공사비	토목	토공사	2,409,000			방수·방습공사	1,770,000			공조설비공사	461,000
		흙막이공사비	3,006,456			목공사	3,130,000		그밖의공종	전기설비공사	6,194,000
		비탈면보호공사	-			가구공사	3,933,000			정보통신공사	3,752,000
		옹벽공사	492,000			금속공사	1,917,000			소방설비공사	6,473,000
		석축공사	164,000			지붕및홈통공사	164,000			승강기공사	1,802,000
		우수·오수공사	655,000			창호공사	6,981,000		그밖의공사비	일반관리비	7,160,000
		공동구공사	-			유리공사	1,409,000			이윤	14,320,000
		지하저수조및급수공사	33,000			타일공사	4,097,000		계		184,650,900
		도로포장공사	623,000			돌공사	2,982,000	간접비	설계비		1,682,591
		교통안전시설물공사	623,000			도장공사	1,344,000		감리비		3,685,287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1,016,000		일반분양시설경비		5,275,000
		조경공사	5,702,000			수장공사	3,343,000		분담금및부담금		8,847,000
		부대시설공사	180,000			주방용구공사	-		보상비		-
	건축	공통가설공사	5,391,000			잡공사	2,884,000		기타사업비성경비		6,003,269
		가시설물공사	2,097,000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2,147,000		계		25,493,147
		지정및기초공사	26,300,444			급탕설비공사	1,835,000	그밖의비용			34,291,000
		철골공사	82,000			오배수설비공사	3,523,000	합계			328,132,700

택지비및건축비가산비산출내역

·아래의택지비및건축비가산비는상한금액산정을위한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3항,「주택법」 제57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개하며,분양가격공시내용과는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단위:원,VAT포함]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택지비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흙막이 공사비	말뚝박기 공사비	지역난방 공사비	구조형식에 의한가산비용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용	법정초과 복리시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인텔리전트설비 공사비				지하주차장 층고증가	법령 변경 등에 관한 가산			분양보증 수수료
									홈네트워크	초고속특등급	에어컨 냉매배관	기계환비설비		건강 친화형 주택	전기차	법죄예방시설	
6,054,370,742	3,272,322,227	5,103,456,482	26,300,444,437	-	6,984,267,058	3,981,032,223	2,483,478,557	2,453,901,453	6,766,756,468	1,898,525,225	4,027,971,662	3,856,756,657	-	1,134,718,627	-	-	703,997,916

택지비 가산비 소계	건축비 가산비 소계
40,730,593,888	34,291,405,846

감리회사및감리계약금액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천원)	비고
건축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2,478,350	부가세별도
전기	㈜대화	508,918	
소방/통신	㈜지티엘이엔지	408,000	

주택도시보증공사의주택분양보증내용

▣보증서발급처: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보증주요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1282021-101-0014000호	229,692,89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 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보증채권자등의 협력의무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부도·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제공: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 할수있음.

○제1조(보증채무의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된 경우에 해당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 이행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의미합니다. 이하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적힌사업주체를말합니다. 이하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줌

○제2조(보증이행대상이아닌채무및잔여입주금등의납부)
①공사는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천재지변,전쟁,내란,그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주채무자가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자가 주채무자의 자금융통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 계약을 의미합니다.

3.입주자모집공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 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공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후에 해당하는 입주금.다만,공사가입주금을관리(주채무자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입 주금
8.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이자, 비용 ,그밖의 종속채무
9.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이 자
10.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 배상금
11.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주어야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사유와 밀접한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입 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품목(예시:홈오토,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부위,그밖의마감재공사)과 관련한금액
14.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그대표자 또는 임직원등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대표자등으로부터 계약금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 입주금 및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제1항제6호에해당하는입주금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잔금은그렇지않습니다.
1.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보증사고를 알리기전까지 납부한잔금
2.임시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전까지 납부한 잔금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자(분양권양수자를포함)를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 계약이전에 그주택분양 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보증 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법인만 보증채권자로봅니다. 이하같습니다.

○제4조(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내에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 계약이행을 기대하기어려운상태를말합니다.
1.주채무자에게부도·파산·사업포기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말함.이하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않습니다.
3.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시공자의 부도·파산등으로 공사중단 상태가 3개월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경우

【보증기간】 해당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복리시설의경우신고일을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사업장의 공동주택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이하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각호의 사유로 사고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각호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일간지(공고를한일간지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중1개 일간지를 말함)에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이하같습니다.
1.제1항제1호의경우에는부도·파산일,사업포기관련 문서접수일 등
2.제1항제2호에서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시행자및시공업체현황

구분	시행사1	시행사2	시공사1	시공사2	비고
법인명	에코델타비에스피에프브이주식회사	코리아디앤아이주식회사	주식회사한양	보성산업주식회사	
주소	광주광역시동구서석로85번길8-12,4층	광주광역시동구서석로85번길8-12,4층	인천광역시남동구미래로14,201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시장길9	
사업자등록번호	457-86-00869	741-87-01886	110-81-14611	408-81-98916	

분양관련문의

대표번호	견본주택위치	홈페이지	비고
1533-0554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3587-6번지	sujain-ed.co.kr	

■견본주택 방문 시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
■본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한양수자인 견본주택 및 고객센터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